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승강기 자체점검 수행 가능 대수의 상한 설정 등〉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74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임시 선임을 신고한 자를 관리주체의 범위에 추가	2
2. 승강기 자체점검 수행 가능 대수의 상한 설정 및 승강기 안전검사 시 자체점검 수행자의 입회 규정 신설 등	5
3. 승강기 운행 상황 파악 등 실태조사 시 CCTV 영상정보 등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29.
3. 회부연월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를 입회하게 하고, 입회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 자체점검 실시 상황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가 불명한 이유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로 임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Ⅲ. 검토의견

1. 임시 선임을 신고한 자를 관리주체의 범위에 추가

개정안은 현행 승강기 관리주체의 범위에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의 부재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대표로서 시·도지사에게 관리주체 임시 선임을 신고한 자”를 관리주체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나.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u> <u>자의 부재 등으로 승강기를</u> <u>관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u> <u>건물의 입주자(가구 등으로</u> <u>구성된 경우 가구별 1인) 등</u> <u>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대</u> <u>표로서 시·도지사에게 관리주</u> <u>체 임시 선임을 신고한 자</u> <u>(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u>

현행	개정안
다. <u>가목 또는 나목</u> 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 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u>자의 복귀 시 임시 선임 효 력은 소멸한다)</u> 라. <u>가목부터 다목까지</u> ----- ----- ----- -----

현행법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 자로 ①승강기 소유자, ②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¹⁾, ③위 ① 또는 ②의 자와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음.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며²⁾, 현행법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안전검사 수검, 안전관리자 선임 등 일정한 책임을 수행해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열거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부재하게 될 경우 관리주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재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이 임시 선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를

1)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함.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법 상 관리주체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를 수행할 관리주체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관리주체의 정의 조항에 해당 항목을 규정한다면,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의 부재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 복수의 관리주체가 중복적으로 경합하는 등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주체의 임시 선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통해 관리주체의 공백으로 승강기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도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임.

2. 승강기 자체점검 수행 가능 대수의 상한 설정 및 승강기 안전검사 시 자체점검 수행자의 입회 규정 신설 등

개정안은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의 소속직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여 자체점검을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안 제31조제5항 신설),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점검반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안 제31조제6항),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자체점검을 수행한 자를 입회하도록 하고(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위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각각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소속직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여 자체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u>자격</u> , 자체점검의 기준·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⑥ -----제5항----- ----- ----- <u>자격, 점검반</u> <u>의 구성</u> ----- -----

현행	개정안
정한다.	-----.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 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 부 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 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 ----- ----- ----- ----- .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31조에 따른 자체 점검을 수행하는 사람을 입회하 게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제82조(과태료) 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 대수를 초과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수행하도록 한 자
<신설>	5의2. 제31조제6항에 따른 점검반 으로 구성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 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5의3. 제31조제6항----- ----- -----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5. (생략) <u><신설></u> 16. ~ 20. (생략) ③ ~ ⑤ (생략)	② ----- ----- -----. 1. ~ 15. (현행과 같음) <u>15의2.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검사 입회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16. ~ 2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대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행정안전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승강기 보유 현황은 885,904대로 파악됨.

[승강기 설치 현황(2025.12.31. 기준)]

승강기 종류						전년대비 증가대수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소형화물용	휠체어리프트	합계	
793,268	39,163	41,935	6,736	4,802	885,904	+19,235

(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승강기의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³⁾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체점검⁴⁾을 실시하고, 자체점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 종합정보망에 자체점검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여 1차적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고시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위임되어 있는데,

기존 운영규정은 자체점검에 투입되는 점검반의 구성을 단순히 2명 이상으로 하도록 했으나, 2명 이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하는 작업 단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정한 구역(예 : 아파트 단지)을 기준으로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형식적인 자체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는 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2명 이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하는 작업 단위를 ‘승강기별’로 명확히 하여 한 대의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이 점검반을 구성하도록 명확히 하였음.

[운영규정 개정 전후 변화]

개정 前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9호)
제16조(안전보건 규정의 준수) ③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u>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u>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해야 한다.
↓
개정 後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호)
제16조(안전보건 규정의 준수) ③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u>승강기별로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u>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사항이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함에 따라 실제 자체점검 현장에서 승강기별로 2명 이상을 1조의 점검반으로 구성하도록 상위 법령에서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유지관리업자 소속직원 1인당 수행 물량이 과도한 점도 형식적인 점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력 1명이 1개월 동안 최대 523대(일당 약 17대, 30일 기준)의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경우도 파악된 바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안은 1차적인 승강기 안전관리방안인 자체점검 제도의 보완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유지관리업자의 소속직원이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의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물량에 대한 자체점검 수행에 따른 부실점검 가능성을 방지하고,

점검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한편, 승강기 안전검사 시에 자체점검을 수행한 자가 입회하여 자체점검의 결과가 안전검사와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유지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의 상한 설정(안 제31조제5항)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유지관리업자의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⁵⁾, 부령에서는 기술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음⁶⁾.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①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체점검 대행 승강기 대수는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에 포함되는 개념인 점을 고려하면⁷⁾, 개정안은 자체점검 수행자의 1인당 수행 물량을 정하여 점검의 부실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데, 유지관리업자가 보유한 소속직원의 수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승강기의 대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유지관리업자의 입장에서는 인력 확보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승강기 유형·규모, 점검자 숙련도 등을 고려한 차등적인 기준을 세분화하고, 단계적 적용과 예외 인정 요건을 마련하여 유지관리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둘째, 점검반의 구성과 관련된 운영규정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상향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법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시·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90을 곱한 대수
3. 제조·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 중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에 50퍼센트를 곱한 대수

7)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가. 주기적인 점검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것(안 제31조제6항 및 제82조제1항제5호의2)과 관련하여, 동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바,

해당 규정을 법률 또는 시행령 중 어느 수준의 법 형식에서 규율할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제재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기존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는 입법조치로서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임.

셋째, 승강기 안전검사 시 자체점검 수행자의 입회 규정 신설(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과 관련하여⁹⁾, 자체점검 수행자의 일정과 안전검사 일정이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입회가 어려울 경우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승강기 안전검사는 검사 주기 및 대상 등에

8) 의안번호 제2214203호(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13.)

9) 참고로, 해당 내용도 점검반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현행 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승강기 안전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승강기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승강기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
2.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3. 승강기부품의 교체
4.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활동
5. 청소 등 승강기의 청결상태 유지
6. 승강기 안전검사의 입회 및 보조 활동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안전관리 활동(이하 "유지관리 업무"라 한다)을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따라 정기검사, 수시검사, 그리고 정밀안전검사로 분류되는데,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 일정에 맞춰 자체점검 수행자의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체점검 수행자의 입회 가능 일정에 맞춰 승강기 안전검사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그 시기에 따라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임.

[승강기 안전검사 유형]

구분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주기	매 2년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대상	설치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자체점검 수행자의 입회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입회 일정의 조율, 불가피한 입회 예외 사유 등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불가피한 입회 예외 사유의 범위, 자체점검 수행자와 동일한 자격을 지닌 자의 대체 입회 또는 사후 확인 절차, 일정 조정 기준 등을 하위 법령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3. 승강기 운행 상황 파악 등 실태조사 시 CCTV 영상정보 등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개정안은 승강기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이하 “CCTV 영상정보”라 한다)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리주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실태조사) ①·② (생략)	제74조(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정한 승강기의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의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실태조사 체계]

구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목적	승강기의 운행 상황 파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
대상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1. 제조·수입업자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2. 유지관리업자의 자체점검의 이행 실태 3. 유지관리업자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식	조사 대상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 가능	
주기	매년	

그런데 현행법령은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만 도입하고 있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청과 관련한 규정은 없어 조사 목적의 충분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CCTV 영상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설치검사·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의 과거 운행 이력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현행법은 개정안과 유사하게 중대한 사고와 관련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사(이하 “중대한 사고 조사”라 한다) 권한을 규정하면서,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¹⁰⁾.

다만, 중대한 사고 조사는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자료 요청 및 수집의 필요성이 높은 점에서 자료 요청 권한을 규정할 실익이 높다고 보이나,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 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사고 보고 및 조사)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승강기에 대해 그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관리주체 및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고피해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 사고피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중대한 사고 발생일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경우, 주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자체점검 이력, 유지관리업자의 자체점검 대행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리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자료 요청을 통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달성하려는 승강기 안전성 확보 등 공익적 목적과 자료 요청을 받아 CCTV 영상 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관리주체 등의 행정적 부담 등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¹¹⁾에 해당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¹²⁾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입법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자료 요청의 조건 및 범위, 제출 절차, 보관 및 파기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자료 최소수집 원칙¹³⁾을 비롯한 해당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CCTV 영상정보 요청 조건, 제출범위·절차, 보관·파기 기준 등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는 입장임¹⁴⁾.

문 의 처

02)6788-5349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13)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14) 한편, 대한승강기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 이용객의 동선을 제외하고 기계실, 승강로 등에 한정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